
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40033호

## 「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「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  
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참여를 희망하시는  
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4. 15.
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### 접수방법

-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에서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제출  
이메일: [gagol173@nate.com](mailto:gagol173@nate.com)

### 문의

-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  
동부지소 ☎ 054-612-2979, 2978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 
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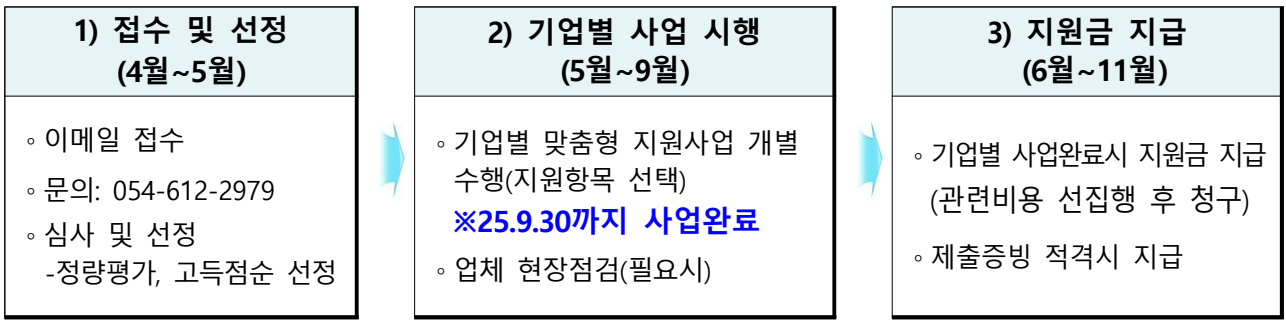
### 선정결과 통보

- 기업별 개별통보

# 1. 사업개요

○ 사업명	: 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
○ 선정방법	: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
○ 사업기간	: 2026. 4. ~ 2026. 12.
○ 지원내용	: 근로복지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맞춤형 사업비 1천만원 지원
○ 신청방법	: 이메일 접수( <a href="mailto:gagol173@nate.com">gagol173@nate.com</a> )
○ 지원규모	: 10개사 정도
○ 신청기간	: 2026. 4. 15.(수) ~ 4. 30.(목)

# 2. 추진절차



\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 3. 사업목적

신산업 중심의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장려

# 4. 지원대상

## 지원 대상

**【공통요건】 ※①~③모두충족**

① **기업규모**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이며,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, 포항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기업

② **고용유지**: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

③ **신규채용**: 202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,  
또는 고용증가율(2024.12.31. 대비 2025.12.31.)이 20% 이상인 기업

-신규채용 기준 : 주 4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

-고용증가율 계산 예시

(※고용보험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)

·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고용인원 : 10명

·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고용인원 : 8명

계산식)  $(10\text{명}-8\text{명})\div 8\text{명}\times 100=25(\%)$

### 【기업별 요건】 (※어느 하나 충족)

- ① 이차전지, 바이오·헬스, 수소에너지 등 **신산업 영위기업** ※업종무관
  -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2호\_ **별표1.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**
  - 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제출 필수(인증, 납품내역, 계약, 인·허가증 외)
- ② 제조업(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이 50% 이상)
- ③ 건설업(건설업 등록증 보유)

### □ 지원 제외 대상

- 신청일 기준 업력이 만2년 미만인 기업
- 동일(유사)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
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기업
-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·폐업 중인 기업
-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## 5. 지원내용 및 범위

---

### □ 지원 내용

- 근로복지 또는 경쟁력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(※**별표1. 항목 중 1개 이상 선택**)
-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(**공급가액 기준**, 자부담 10% 이상)

**별표1. 『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』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**

분야	지원항목	지원 내용
근로자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	근로자 건강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※자부담의무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 내 상시근로자 대상 건강검진비 지원</li> <li>- 단체검진 또는 근로자 개별검진 가능 (단, 개별검진시 '건강검진센터'를 통한 검진만 지원가능)</li> <li>- 인당 50만원 이내 지원(초과비용 발생시 업체(근로자) 부담)</li> </ul> </li> </ul>
	근로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물품, 집기류, 생산설비 관련 항목 지원불가</li> <li>•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휴게실, 샤워실 등 개보수</li> <li>- 환기·집진장치, LED조명 설치 및 개보수</li> <li>- 노후 작업장 내·외부 개선 (내외벽 및 바닥 도색, 출입시설, 난간, 계단 등)</li> </ul> </li> <li>• 위험,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방 및 안전시설(경보시스템, 안전보조시설물) 설치, 오페수처리시설, 대기오염 방지시설, 악취저감시설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보안시설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CTV 및 보안시시스템 설치 등</li> </ul> </li> </ul>
기업 경쟁력 향상	경영여건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영진단 및 컨설팅 / 투자유치, 법률자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운영 전반(기술, 생산, 마케팅, ESG, AI 등) 컨설팅 지원</li> <li>- 자금조달(벤처캐피탈, IR 등) 외 각종 법률자문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조직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원 기술훈련 등 직무교육 지원</li> <li>- 노사관계 및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개최 등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선</li> </ul>
	기술·제품 고도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외 규격인증, 산업재산권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표, 디자인 특허, 실용신안 출원(등록) 관납료 및 대행 수수료 지원</li> <li>- 제품 및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취득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• 국내외 시험분석(인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품 성능 시험·분석·인증 수수료 등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• 공정혁신, 연구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산 설비·공정 진단 및 솔루션 지원</li> <li>- 개발기술 시장조사, 진단 및 컨설팅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

## 6.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

### □ 선정 기준

- **【1기준】** 모집결과 예산 범위내 신청시
  -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선정 **※평가 미 실시**
- **【2기준】** 예산 범위 초과 신청시
  - 평가기준에 따라 동순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(10개사 정도)

구 분	기 준
1순위	· 동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, 본점이 포항에 소재하는 기업
2순위	· 동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, 지점이 포항에 소재하는 기업 ※ 단, 포항 사업장에 근무인원이 있고, 신규채용 인원이 포항에 근무하는 경우
3순위	· 동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

### □ 추가 선정

-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, 지원중지,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시 평가 후순위 업체 추가 선정

### □ 평가항목 및 배점 **※별첨**

### □ 선정 통보 및 현장점검

- 선정업체 서면 개별 통보
- 선정업체 현장점검 실시(필요시)  
〈현장점검 결과 사업장 미 운영, 근로자 미 근로시 지원 제외〉
- 신청분야(지원항목)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최종 세부 추진내용 확정
  - 지원항목 선택 후 수행업체(거래업체)와 계약 전 진흥원과 협의
  - ※ 해당 수행업체의 적격 여부 및 지원범위 안내**

### □ 사업추진 및 지원금 지급

- 추진절차
  - 선정된 기업이 신청한 지원항목(별표1)에 따라 적격 거래처 선정 및 사업수행

- 사업완료시 거래 대금 선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
-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기업 계좌로 지급
- 지원항목에 따라(근로환경 개선 등)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
- **사업수행기간: 선정통보 ~ 2026. 9. 30.** ※기한까지 미완료시 사유서 제출
- **사업변경:** 추진사업 변경 요청시 검토 후 승인(최초 선정금액 범위내)

#### □ 지원제외 및 환수

-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업 결과물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(허위자료 제출 등)
- 해당 지원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받는 경우
- 사업 지원기간 중 사업장 미운영, 휴·폐업 하는 경우
-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등

## 7. 신청방법

#### □ 신청방법

- **접수기간:** 2026. 4. 15.(수) ~ 4. 30.(목)
- **접수방법:** 이메일([gagol173@nate.com](mailto:gagol173@nate.com)) 접수
- 접수시 "제출서류"를 순서대로 묶어 **1개의 PDF 파일**로 제출
- 신청 후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요망

#### □ 문의

- **전화:** 054-612-2979, 2968
- **방문:**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,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

#### □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됨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[www.gepa.kr](http://www.gepa.kr))에 공고 예정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사업 신청 시 제 출	①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【서식】
	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
	③ 업종별 입증자료(신산업 기업 입증자료, 공장등록증명서, 건설업등록증)
	④ 발급가능한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(해당시_제조업 전업율 입증자료)
	⑤ 2024년 및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
	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2024. 12. 31 / 2025. 12. 31 기준 각 1부)
	⑦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(신청일 기준 10일 이내)
	⑧ 신규채용 인원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급여 이체내역 각 1부
	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	⑩ 평가에 필요한 근로복지제도 운영, 기업 수상실적 입증자료(해당시)
	⑪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(요청시)

※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별도 안내

**별첨. 『2026년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』 선정 평가표**

□ **평가항목 및 배점**

평가항목 (배점)	점수 부여 기준	비고
고용창출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채용 인원 또는 고용증가율 (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채용 인원 / 2024연말 대비 2025연말 고용인원 증가율)</li> <li>- 8명 이상 또는 80% 이상 (40점)</li> <li>- 6명 이상 또는 60% 이상 (30점)</li> <li>- 4명 이상 또는 40% 이상 (20점)</li> <li>- 3명 이상 또는 20% 이상 (10점)</li> </ul>	· 신규채용 또는 고용증가율 중 <b>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</b>
매출증가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출성장률 [(당기매출액-전기매출액)/전기매출액]×100%</li> <li>- 30% 이상 (30점)</li> <li>- 20% 이상 ~ 30% 미만 (25점)</li> <li>- 10% 이상 ~ 20% 미만 (20점)</li> <li>- 0% 이상 ~ 10% 미만 (15점)</li> <li>- 0% 미만 (10점)</li> </ul>	· 매출자료 기준
근로복지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운영 (기숙사(관사), 식당, 보건실, 체육시설, 통근버스, 학자금지원, 사내대회(시상), 직원교육, 성과급 등)</li> <li>- 5건 이상 (20점)</li> <li>- 2건 ~ 4건 (10점)</li> <li>- 1건 이하 (5점)</li> </ul>	· 입증자료 제출
경영활동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및 대표자 수상 실적 ※ 3년 이내 (기업 활동 관련 시장급 이상 수상)</li> <li>- 1개 이상 : 10점 / 없는 경우 : 5점</li> </ul>	· 입증자료 제출
가점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산업 사업분야 영위 여부</li> <li>- 여 : 10점 / 부 : 0점</li> </ul>	· 입증자료 제출
110점		

붙임1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2호 「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」

[별표1] 신산업 창업 분야(제3조제1항 관련)	
①	인공지능
②	빅데이터
③	5G+
④	블록체인
⑤	서비스플랫폼
⑥	실감형콘텐츠
⑦	지능형 로봇
⑧	스마트제조
⑨	시스템반도체
⑩	자율주행차
⑪	전기수소차
⑫	바이오
⑬	의료기기
⑭	기능성 식품
⑮	드론·개인이동수단
⑯	미래형 선박
⑰	재난/안전
⑱	스마트시티
⑲	스마트홈
⑳	신재생에너지
㉑	이차전지
㉒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㉓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㉔	우주
㉕	차세대 원전
㉖	양자
㉗	사이버 보안